

수사적 과장(修辭的誇張)과 명예훼손 책임: ‘종북(從北)’이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치인에 대하여 ‘종북세력’, ‘종북인사로 지칭하며 비판하는 글이 공표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종북’으로 지목된 정치인이 자신은 단순히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뿐인데도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입장’이라는 뜻의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종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은,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를 ‘종북’으로 비난한 사안에 대하여, ‘종북’이란 표현은 의견이거나 ‘수사적 과장(修辭的誇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수사적 과장이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수사적 과장’에 대하여 본다. 수사학은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며, 과장이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러서 나타냄(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므로, ‘수사적 과장(rhetorical hyperbole)’이란 결국

사상이나 감정 등을 효과적·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실보다 불려서 나타내는 표현'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진술자도 문자적 의미 그대로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며 청취자도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음주운전자를 '도로 위의 살인자들'이라고 지칭한 경우, 이는 전형적인 수사적 과장으로서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음주운전자가 모두 고의적인 살인자라거나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이어야 하고, 어떤 진술(기사)이 가지는 의미는 일반 청취자(독자)가 그 진술(기사)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진술(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에서 진술(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취자(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사적 과장이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수사적 과장은 어떤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명예훼손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법원도 은행 불법대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야당 국회의원이 그 수사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당 간부가 '야당에 의한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지칭하며 전모를 밝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참조).

또한 미국에서도 원고 부동산개발업자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당국을 상대로 도시계획의 변경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강하게 압박한 행위를 '협박(blackmail)'으로 표현한 것은 수사적 과장으로서 명예훼손적 의미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Greenbelt Cooperative Publishing Association v. Bresler, 398 U.S. 6 (1970)) 및 라이벌 사업가를 '피해망상적(paranoid)' 또는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이라고 표현한 것을 수사적 과장으로 본 사례(Fram v. Yellow Cab Co., 389 F.Supp. 1314 (W.D. Pa. 1974))가 있다.

둘째, 수사적 과장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대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의 투쟁과 운동방식 등을, “정권타도투쟁”, “북한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모두 피고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그에 비유한 수사적 과장표현으로서 의견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또한 대법원은, 술에 취해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소외인이 경찰에 의하여 원고 정신병원에 인계된 후 보호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4년 동안 입원 당했다는 방송보도에 대하여, “방송내용 가운데 ‘강제입원 내지 ‘강제수용’,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 ‘영터리’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소외인의 입장에서 보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었고 ... 장기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나아가 미국에서도, 적법하게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데 대하여 낙태가 살인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본 사례(Commonwealth v. Canter, 269 Mass. 359, 168 N.E. 790 (1929)), 지속적으로 통계를 오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과학자를 ‘거짓말쟁이(liar)’라고 지칭한 것은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Edwards v. National Audubon Society, 556 F.2d 113 (2d Cir. 1977))가 있다.

다시 ‘중북’ 표현으로 되돌아 가보자.

과거 우리 대법원은, KBS PD인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을 기사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사실의 적시로 보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한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또한 배우 문성근을 ‘중북’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한 글에 대하여, “중북(從北)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주사파란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3.가합12076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9300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를 ‘중북’ ‘주사파’로 표현한 기사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중북이라는 말은 과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

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하고, 평균적 일반인뿐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 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중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이에 대하여는 반대 취지의 대법관 5인의 소수의견이 있다).

위 판결에서처럼 특정한 용어가 시간의 흐름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사례로는 '섹시하다'를 들 수 있다. 이 용어는 원래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뜻으로(표준 국어대사전) 명예훼손적 의미가 다분하였으나, 최근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의 준말)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성적 측면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을 포함하여 '뛰어나고 매력이 있다'는 긍정적 의미가 더해져, 그 자체로 명예훼손적 의미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어떤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운 유사한 사례로서, 미국에서 '파시스트(fascist)'나 '나치식의 반유태주의(Nazi-style anti-Semitism)'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하도 불명확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한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은 앞서본 배우 문성근을 중복으로 지칭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이유는 설사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48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이 사건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에서, 위 전원합의체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중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공인 특히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에 따르면, 앞으로 '중복'이나 '주사파'라는 표현으로 지칭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밝힌 것처럼 '극우', '극좌', '보수우익'이란 표현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수사적 과장이라 하여 함부로 '중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표현이 문자적 의미 그대로 사용된 것인지 수사적인 과장으로 사용된 것인지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정치적 위상, 표현의 전체 취지나 맥락에 따라, 앞서 본 배우 문성근 사건에서처럼 '중복'이 원래의 의미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